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3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1. 13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청사 편익시설 대관 비대면(온라인) 신청 시 이용 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추가하며, 청사 내 회의실 시설 변동에 따른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편익시설 종류: 대회의실 삭제
- 나. 편익시설 운영시간: 대회의실 삭제
- 다. 편익시설 대관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: 신청서 양식 추가
- 라. 편익시설 사용료: 대회의실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0. 10. 16. ~ 2020. 11. 5.) 결과: 별도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사람을”을 “사람 및 단체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청사”를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청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편익시설”을 “구청장은 편익시설”로, “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”를 “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의”로, “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를 “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- 3 -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설물”을 “편익시설”로, “자격은”을 “사용자는”으로, “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”를 “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구”로 하며, “금천구민”을 “구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편익시설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제1항 후단 중 “사용일정에 공백이 있”을 “편익시설 사용일정이 없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편익시설”을 “구청장은 편익시설”로, “체력단련실은”을 “체력단련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”을 “따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승인 후 사용자가”를 “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”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등”을 “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설”을 “편익시설”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구청”을 “청사”로 하고, 제7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, “부적당하다고”를 “편익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편익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”를 “사용자의 설비”로,

- 4 -

“구청장”을 “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비”를 “사용자의 설비”로, “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”를 “원상복구 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편의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편의시설 사용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일부나 전액을”을 “전부나 일부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회교육 시설”을 “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”로 하고, “감면”을 “감경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, “감면”을 “면제”로 한다.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

제10조제1항 중 “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”를 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5일전”을 “5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4일전”을 “4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진다”를 “질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”를 “그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설물”을 “편의시설”로 한다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, 제14호 및 제15호, 제15의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- 5 -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별표1을 별표 1로 하고, 별표 1 중 “금천구종합청사 편의시설”을 “편의시설”로 하며, 별표 1 중 대회의실란을 삭제하며, 체력단련실 부대시설란 중 “각10개”를 “각 10개”로 한다.

별표2를 별표 2로 하고, 별표 2 중 “금천구종합청사 편의시설”을 “편의시설”로 하며, 별표 2 중 대회의실란을 삭제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편의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(이하 “청사”라 한다)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“사용자”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 2. ----- ----- <u>사람 및 단체를</u> ----- -----.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편의시설의 종류) <u>청사</u>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	제3조(편의시설의 종류) <u>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청사</u> -----.
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 (생략) ② <u>편의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.</u>	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구청장은 편의시설</u> ----- ----- ----- <u>수</u> ----- ----- -----.

<후단 신설> ③ 편의시설은 <u>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이 경우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<u>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</u> ③ ----- <u>구청장의</u> ----- ----- ----- <u>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제5조(사용자의 자격)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 1. <u>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</u> 2. (생략) 3.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<u>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	제5조(사용자의 자격) ----- <u>편의시설</u> ----- <u>사용자</u> 는 -- <u>호와 같다.</u> 1.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<u>구민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편의시설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</u>
제6조(사용신청 및 승인) ① <u>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.</u>	제6조(사용신청 및 승인) ① <u>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

100분의 50 감면

3. 삭 제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

②·③ (생 략)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

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
4.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① (생 략)

② 편익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

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

4. -----
----- 인정하는 -----
면제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-----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5일 전-----

4. ----- 4일 전-----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입장 및 행위제한)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전염병질 환자

2. (생 략)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1]

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종류[제3조 관련]

시설명	면적	시설 형태	부 대 시설
광장		(생 략)	
썬큰광장			

----- 질 수 있다.

제13조(입장 및 행위제한) -----

----- 그 사용자
의 입장을 제한하게-----
-----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, 제14호 및 제15호, 제15의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편익
시설 -----

<삭 제>

[별표 1]

편익시설 종류[제3조 관련]

시설명	면적	시설 형태	부 대 시설
광장		(현행과 같음)	
썬큰광장			

대회 상황실	176.45 ㎡	테코타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장비, 프로세서, 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20개 ○ 회의용 의자 50개
기획 상황실	(생략)		
대강당	(생략)		
구내식당	(생략)		
체력 단련실	(생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(---각 10개)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	
세미나실	(생략)		
대회의실 (의회)	(생략)		
제1소회의실 (의회)	(생략)		
제2소회의실 (의회)	(생략)		

<약 계>	
기획 상황실	(현행과 같음)
대강당	(현행과 같음)
구내식당	(현행과 같음)
체력 단련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(---각 10개)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
세미나실	(현행과 같음)
대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
제1소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
제2소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**금천구종합청사 편의시설 운영시간
[제4조제1항 관련]**

구 분	운 영 시 간	비 고
광 장	(생략)	
편 른 광 장	(생략)	
대 회의 실	평 일 - 09:00 ~ 21:00 토 · 일 · 공 휴 일 - 09:00 ~ 17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석 설 연휴 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
기획상황실	(생략)	
대강당	(생략)	
구내식당	(생략)	
체력단련실	(생략)	
세미나실	(생략)	
대회의실 (의회)	(생략)	
제1소회의실 (의회)	(생략)	
제2소회의실 (의회)	(생략)	

[별표 2]

**편의시설 운영시간
[제4조제1항 관련]**

구 분	운 영 시 간	비 고
광 장	(현행과 같음)	
편 른 광 장	(현행과 같음)	
<약 계>		
기획상황실	(현행과 같음)	
대강당	(현행과 같음)	
구내식당	(현행과 같음)	
체력단련실	(현행과 같음)	
세미나실	(현행과 같음)	
대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	
제1소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	
제2소회의실 (의회)	(현행과 같음)	

[별표 3]

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사용료(제9조제2항 관련)
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 고
광 장	-	무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력 사용 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
편 른 광 장	1회	8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 초과 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
대 회의 실	1회	4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기획상황실	1회	4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대 강 당	1회	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
구내식당	1회	9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가산
체력단련실	월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공휴일은 휴무 ○ 경로우대자(만65세 이상)는 80% 할인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을 중첩 시 높은 할인을 적용
세미나실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대회의실 (의회)	1회	3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
제1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제2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
[별표 3]

편의시설 사용료(제9조제3항 관련)
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 고
광 장	-	무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력 사용 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
편 른 광 장	1회	8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
기획상황실	1회	4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대 강 당	1회	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
구내식당	1회	9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 가산
체력단련실	월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공휴일은 휴무 ○ '노인복지법'에 따른 노인(65세 이상)은 30% 할인 ○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을 적용 사유가 겹칠 시 더 높은 할인을 적용
세미나실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대회의실 (의회)	1회	3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
제1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제2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
※ 공통사항

-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 (방난방시 30% 추가가산)
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의 각각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편익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한다. 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
※ 별도사항

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<신 설>

※ 공통사항

-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일·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 (방난방시 30% 추가 가산)
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와 같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각각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, 1회 사용시간 사용승인 받은 편익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함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
※ 별도사항

구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[별지 제1호서식]

편익시설 사용 신청서[제6조제1항 관련]

편익시설 사용 신청서			
성 명 (회사명)			
주 소		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전화번호 (FAX)		
이동전화	E-Mail		
대표자명 (단체신청시)	담당자명 (단체신청시)		
행사 내용	행사명	참여 인원	
사용 시설	장 소 (V·프리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강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극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청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상황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미나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식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소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소회의실(의회)	

사용일자	년 월 일
사용일시	시 분 ~ 시 분 까지
사용 일시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강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극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청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상황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미나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식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소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소회의실(의회)
원수작성 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이크 <input type="checkbox"/> 개
연 방 사 용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방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사용
「사용자별시금원구중앙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은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
본인은 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「선거정부법」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장이 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.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거나 「선거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	
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청 구청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청 구의회장 귀하	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
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종류 및 운영시간, 신청
서 양식 추가에 따른 개정으로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으므로,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
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정보형
연 락 처	2627 - 1007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금천구(행정지원과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편익시설"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(이하 "청사"라 한다)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"사용자"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"사용자의 설비"란 기존 설비 이외에 편익시설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편익시설의 종류)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규정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.
- ③ 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사용자의 자격)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
2.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 개인, 단체
3.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사용신청 및 승인)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 중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.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시설은 신청기간, 방법, 절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제한 및 취소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3. 규정 내 질서와 미용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
5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- 6. 청사 또는 편의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7. 그 밖의 구성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편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성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 ①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
 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인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
 3. 삭제
 4. 그 밖에 구성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
-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- ③ 편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.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.
 1.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
 2. 국가 및 구성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
 3.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 4.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청사, 편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② 편의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2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성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3조(입장 및 행위제한) 구성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전염병질환자
2. 화약류, 총포류, 도검 등 타인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성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4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사,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1] <개정 2011.12.29., 2017.5.15>

금천구종합청사 편의시설 종류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면 적	시설형태	부 대 시 설
광 장	950㎡	대 리 석	○ 전력사용 가능
썬큰 광 장	560㎡	대 리 석	○ 전력사용 가능
대 회 의 실	176.45㎡	테코타일	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20개 ○ 회의용 의자 50개
기획상황실	217.13㎡	테코타일	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○ 고정식 회의실 58석 ○ LED 전광판
대 강 당	679.48㎡	테코타일	○ 조정실(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) ○ 강단 ○ 대기실 2개소 ○ 의자 600개
구 내 식 당	633.86㎡	테코타일	○ 4인용 식탁 73개 ○ 의자 292개 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※ 조리기구 사용은 제한
체력단련실	241.17㎡	마 루	○ 런닝머신 등 26개종(41개 운동기구) ○ 샤워실(남·여) 2개소(샤워기 각10개) ○ 탈의실(남·여) 2개소 ○ 락카 남 48개, 여 32개 ○ 신발장 132개
세미나실	52㎡	테코타일	○ 냉난방기 ○ 이동식프로젝터, 이동식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2개 ○ 회의용 의자 10개
대회의실(의회)	128㎡	카 펫	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12개 ○ 회의용 의자 20개
제1소회의실(의회)	70㎡	카 펫	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6개 ○ 회의용 의자 11개
제2소회의실(의회)	70㎡	테코타일	○ 방송장비, 프로젝터, 스크린 ○ 회의용 탁자 6개 ○ 회의용 의자 11개

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운영시간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운영시간	비고
광장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
센트럴광장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21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
대회의실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
기획상황실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매주 월요일 사용 제한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
대강당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
구내식당	평일 - 18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
체력단련실	평일 - 10:00 ~ 17:00 토·일·공휴일 - 휴무	
세미나실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
대회의실 (의회)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○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
제1소회의실 (의회)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○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
제2소회의실 (의회)	평일 - 09:00 ~ 21:00 토·일·공휴일 - 09:00 ~ 17:00	○ 추석, 설 연휴기간은 휴무 ○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○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○ 구의회 회기 중 사용 제한

[별표3] <개정 2014.5.2., 2017.5.15>

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(제9조제2항관련)
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
광장	-	무료	○ 전력 사용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
센트럴광장	1회	8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 사용 초과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
대회의실	1회	4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기획상황실	1회	4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대강당	1회	10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
구내식당	1회	9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가산
체력단련실	월	20,000원	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공휴일은 휴무 ○ 경로우대자(만65세 이상)는 30% 할인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을 중첩시 높은 할인을 적용
세미나실	1회	2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대회의실 (의회)	1회	3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
제1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제2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
※ 공통사항

-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(병난방시 30% 추가가산)
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의 각각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편익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한다. 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
※ 별도사항

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채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